

제439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28일(월)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6)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5.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0)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5)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6)
1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2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2)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3)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3)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5)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5)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5)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05)
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5)
3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3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2)
33.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8)
34.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2)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2)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1)
38.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0)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3)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0)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0)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8)
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8)
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1)
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67)
4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8)
4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9)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0)
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7)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7)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8)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51)
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0)
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0)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12)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0)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1)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3)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9)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90)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6)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6)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6)
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0)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9)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2)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4)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4)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1)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5)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9)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1)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5)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9)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7)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71)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7)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2)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8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4)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3)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2)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2)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5)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8)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0)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5)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5)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8)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5)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6)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이준석 의원·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9)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2)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6)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7)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8)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7)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8)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9)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4)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9)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4)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1)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9)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3)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0)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1)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84)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1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22)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7)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2)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6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2)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9)
2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6)
2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1)
205.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추진호 외 51,2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3)
206.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신종민 외 54,0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6)
207.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208.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조영민 외 51,2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8)
209.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21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김제현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211.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권은정 외 50,0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7)
212.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213.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조아현 외 50,2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9)
214.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민기수 외 50,9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8)
215.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상욱 외 51,8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5)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14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6) 15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15
5.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1) 15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0) 15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9) 15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15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5) 15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15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15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15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9) 1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15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7) 15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4) 15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6) 15
1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15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16

2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16
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16
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2)	16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3)	16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3)	16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5)	16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16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5)	16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5)	16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05)	16
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5)	16
3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16
3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2)	16
33.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8)	16
34.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2)	16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2)	16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16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1)	16
38.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0)	16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3)	16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0)	16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0)	16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8)	16
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8)	16
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1)	16
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67)	16
4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8)	16
4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16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9)	16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0)	16
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7)	16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7)	16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8)	16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51)	16

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0)	16
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0)	17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12)	17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0)	17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1)	17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3)	17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17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9)	17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90)	17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6)	17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6)	17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6)	17
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5)	17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0)	17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9)	17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2)	17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17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4)	17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9)	17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4)	17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1)	1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5)	17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9)	17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1)	17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2)	17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5)	17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9)	17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7)	17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71)	17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7)	17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4)	17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2)	17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82)	17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9)	1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4)	1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3)	17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2)	17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9)	1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1)	1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1)	17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63)	18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4)	18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2)	1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4)	18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5)	18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8)	18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4)	18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0)	1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1)	1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0)	18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9)	18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1)	1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5)	18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5)	18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2)	1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8)	18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0)	18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5)	1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4)	1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6)	1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6)	1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3)	18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6)	18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9)	18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4)	18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이준석 의원·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9709)	18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4)	1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7)	18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8)	1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9)	18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2)	1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5)	18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7)	18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18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18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18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1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18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19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19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1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19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1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19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1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6)	 1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3)	 1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6)	 1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7)	 1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8)	 1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5)	 19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7)	 1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8)	 1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9)	 19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3)	 19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1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3)	 19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4)	 19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5)	 1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4)	 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4)	 1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8)	 1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9)	 19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3)	 1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1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5)	 19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4)	 19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6)	 1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1)	 1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2)	 1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1)	 1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2)	 1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0)	1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6)	1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5)	19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5)	19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4)	2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9)	20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9)	20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2)	20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8)	20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8)	20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7)	20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8)	20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9)	2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3)	20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5)	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7)	20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0)	2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2)	20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3)	20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0)	20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1)	2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5)	20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84)	20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5)	20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13)	20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22)	20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7)	20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2)	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8)	2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9)	2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34)	20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66)	20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2)	20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8)	20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9)	2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9)	20
2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6)	20

2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1)	20
205.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추진호 외 51,2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3)	20
206.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신종민 외 54,0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6)	20
207.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21
208.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조영민 외 51,266인 국민동의로 제출) (청원번호 2200258)	21
209.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21
21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김제현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21
211.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권은정 외 50,0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7)	21
212.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21
213.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조아현 외 50,2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9)	21
214.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민기수 외 50,9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8)	21
215.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상욱 외 51,8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5)	21
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1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아마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곧 들어오실 텐데요, 의결정족수 되는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는 정부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대미 투자에 대한 비공개 보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부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재정경제부는 오늘 회의 의사일정이 통보된 이후에야 관련 보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다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동의·보고·제출 등 법률상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의는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동의가 한 건 있고요, 또 한 건은 국가재정법상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 2건의 동의 건이 있습니다.

보고가 17건, 제출이 22건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추천하는 추천권, 인사에 관한 추천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관련된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국회 보고 의무 또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보고·제출, 혹은 내부절차 마친 다음 공표 전에 보고할 수도 있고 사후보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정부장관께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측건대 미 측과 협의해서 그 합의된 안이 바로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추진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성사가 됐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아는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 추석 전에 비공개 보고를 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고 그 이후에 한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미국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에 내용상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내용상 이견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다 이렇게…… 미국 내부의 절차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서류제출 요구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총 352건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국회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 의결된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오늘 회의 중에 협의를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6)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5.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0)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5)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6)
1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2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2)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3)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3)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5)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5)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5)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05)
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5)
3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3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2)
33.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8)
34.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2)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2)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1)
38.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0)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3)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0)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0)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8)
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8)
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1)
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67)
4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8)
4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9)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0)
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7)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7)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8)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51)
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0)

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0)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12)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0)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1)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3)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9)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90)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6)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6)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6)
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0)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9)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2)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4)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9)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4)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1)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5)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9)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1)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2)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5)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9)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7)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71)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7)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4)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2)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8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4)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3)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2)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2)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5)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8)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0)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5)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5)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8)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5)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6)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이준석 의원·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709)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2)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6)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7)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8)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7)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8)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9)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4)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9)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4)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1)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9)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3)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0)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1)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84)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1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22)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7)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2)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6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2)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9)
2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6)
2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1)
205.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
에 관한 청원(추진호 외 51,2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3)
206.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신종민 외 54,0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6)

207.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208.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조영민 외 51,2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8)
209.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21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김제현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211.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권은정 외 50,0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7)
212.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213.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조아현 외 50,2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9)
214.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민기수 외 50,9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8)
215.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상욱 외 51,8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5)

(14시13분)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5항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3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까지 우선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대체토론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소외계층 확대라는 불평등의 그늘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경제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금도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자산 불평등만 있었다면 지금은 기후불평등, 정보불평등, 건강불평등 등 삶 전반으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다른 산업은

여전히 저점을 해매는 이른바 K-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아니, 도리어 퇴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OECD 29개국 중 28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복지선진국 북유럽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보다 두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불평등한 국가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 당국은 물론 정부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정부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정작 대응은 담당 부서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하고 부의 재분배는 재정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재정 당국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불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제도조정, 예산편성 권한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불평등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뀌야 20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와 계시지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 중심의 질서에서 경제안보와 자국의 생산 능력을 중시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비 단계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정책의 중심을 생산 단계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만שי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략산업에 같은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이번 6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라는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 대규모 설비투자 단계, 양산과 시장 확대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도체는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하는 지원보다 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유인이 더 큼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생산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굳이 한다면 신규 설비투자과 공급망 구축,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차전지는 주요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과 국내 생산의 결손·저수익 구조로 세액공제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도 함께 지원해야 효과적입니다.

핵심소재와 AI 로봇 부품은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하므로 공장·설비 구축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 및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런데 정부가 위 모든 전략산업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산업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략 제조업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봇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이용률은 세계 1위지만 로봇산업 종합경쟁력 순위는 로봇산업 보유국가 주요 6개국 중 최하위 6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봇부품 생태계는 전기차부품 생태계를 전제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래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확실히 지원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향후 AI 제조 등 AI 피지컬 시대가 도래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국내 자동차기업이 미국 등 해외 생산을 확대해 가더라도 지원정책을 써서 반드시 마더팩토리와 핵심 공급망은 국내에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구매보조금 지원과 생산보조금 지원, 생산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G2는 구매보조 없이 생산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전기차 생산국가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만 조 단위에 이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 해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필요했던 구매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전기차의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되었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올 상반기에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 시장을 35%나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40%를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절망적입니다. 안 그래도 임금이나 원자재가격, 전기요금 등 원가경쟁력에서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 혈세까지 보조해 주면서 한마디로 자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반 이상을 장악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안보상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는 자율주행차로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확산되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밀 도로망·시설물·이동패턴이 대량 축적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통제나 데이터 저장·처리·국외전송 등에 대해 원격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차에 대해 한국의 각종 데이터, 보안시스템 등을 공유할 셈인지 의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스템, AI 퍼지컬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차량통신시스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안보, 공급망의 문제이자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의 문제로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심사하실 때 산업의 생애주기와 공급망 전반을 살펴 각 산업이 처한 단계에 맞게 지원수단을 설계해 주시되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차산업의 중요성과 배터리, 부품, 소재의 국내 생산과 이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디 제가 제출한 법안이 전기차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내국인 노동자들, 국내 부품, 공급망, 부품업체들 그리고 국내 소비자 후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26년 8월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웹툰 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 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인문·학술 분야 등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변동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의 구성과 활용 방식 및 기금의 운용·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 제50항, 제52항, 제54항, 제55항, 제59항, 제61항, 제66항, 제85항, 제202항 및 제203항, 총 11건의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금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거주용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의 성실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탈세·재산 은닉 등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충민원 심의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압류 해제의 예외 요건을 신설하여 국세 납부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압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비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166건과 4건의 청원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과 관련 조특법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마는 이러한 거주공제로의 전환은 실거주를 유도하고 투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이나 현행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과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는 한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가액과 실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폐지로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기조가 약화될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법인세법 및 관련 조특법에 대하여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특정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책효과가 높은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공제 대상이나 공제 수준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조특법에 대하여는, 특히 가업상속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으로서 조세회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심사제 적용·도입 등으로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경제·재정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하여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는 등 위법행위의 적발과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까지 상향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고액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당사자가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추가세수·초과세수 등의 재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상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수입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기금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초과세수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및 이자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여력을 미래투자와 재정건전화에 각각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금의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규모와 미래대응투자로 사용하는 규모 간의 적절한 배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입 부족 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규정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30%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은 경기·세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신속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과 국회의 재정통제 및 국가채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 등에 관한 6건의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위험성 등을 이유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반대하고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지급결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CBDC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위협에의 노출 등과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여야 간사들께서 증인에 관한 1차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에 대해서 의결 준비를 할 텐데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계속 협의를 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다시 2차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신청을……

배준영 간사는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 의결 준비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묻는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인·참고인 협의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참고인 43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증인은 36명인데 협의 결과 수용된 증인은 고작 5명뿐입니다. 참고인도 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결국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번 국정감사까지 핵심 증인을 빼고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정쟁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 정책결정과 협상 과정에 참여해 국회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도입이 결정됐는지, 세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 책임자입니다.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후속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되었고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증인·참고인 협의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까지 핵심 당사자가 없는 검증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배준영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합의에 대한 의결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따져 보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라 하면 여야간에 협의하셔서 증인으로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박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의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배준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매우 유감임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1명의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종류별로 분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한 사람씩이라도 하자

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서 1년 동안의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여당이 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제가 요구한 사람들이 무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전닉스 ETF도 있지만 세제개편안도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환전 요구도 있고 세무법인 선택에 관한 것도 있는데 21명에 대해서…… 아니,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해 줘야지 단 한 사람도 안 해 주고 국정감사를 하라고 하는 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여와 야가 따로 없이 손을 잡고 국정감사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 보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증인을 채택해 주셔야지 단 한 사람도 채택하지 않고 국정감사 하라고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오기형 간사님이 좀 심기일전하셔서 가지고…… 위원이 요구하는 증인을 신청 안 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덮고 덮고 숨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기형 간사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제가 신청한 21명의 증인에 관해서, 분야가 4개입니다. 4개 분야의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채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승래 오기형 간사님.

○오기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아니라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함께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나 추경호 부총리 신청을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논의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것들을 오늘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건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 속에서 같이 말씀을 좀 올리자면 일단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경위에 관련된 의제나 재경위 소속기관들과 관련돼서 의제가 있으면 이견 재경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타 상임위 소속 의제고 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거나 타 상임위 소관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서 부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 소속기관에서 어떤 회의를 주최했는데 그 회의 참석자들을 재경위 국감 과정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가 청와대를 소관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그 찬반 여부 내지는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여한구 본부장 같으면 실제 산자위에서 같이 풀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그 산하기관이었고—마치 대미 투자가 문제 되기 때문에 재경위에서 산업부장관을 불러다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쪽에서 불러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경위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재경위에 관련된 의제나 그 기관과

관련해서 최대한 서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하고, 기업인들의 경우에도 실제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되면서, 여당·야당 위원님들께서 신청했던 분들이 이미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논쟁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안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분 야당 위원님들의 요청을 오기형 간사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서로 맞춰 가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합의를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기관증인으로는 단말기 자료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소관기관은 임원급 이상 및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6인과 참고인 4인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의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 추가 협의를 전제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승래 예, 그건 제가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서지를 나눠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 간에 합의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준석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안 하시고.

정성호 위원님 안 하시고, 이종욱 위원님 안 계시고.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시고.

이광재 위원님 안 계시고, 임이자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시고.

김남준 위원님 없으시고.

그러면 이준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윤후덕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 조승래 아니, 순서대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저는 합의대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제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과 미래대응기금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손대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타 부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혹은 타 부처 소관 정책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관리되는 거잖아요. 총 몇 개 사업이었지요, 이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40개 사업입니다.

○김영환 위원 140개.

이를테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그쪽에 농어촌지원계정이 있거든요. 구조개선지원계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구조가 원래는 맞아요,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농어촌 구조의 현실을 농림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세입원은 농특세에서 이전해서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출사업으로 결정되는 건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지특회계 지원계정으로 했었던가요? 그쪽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특회계 지원계정은 초광역권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원래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서 지특회계 지원계정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완전히 이관해서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특히 농림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농어촌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해서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독특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이걸 이관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농특회계가 증권거래세로 인해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농특회계는 말 그대로 그 목적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니다. 다만 말씀하신 농어촌기본소득이 내년에 35개 군까지 그다음에는 69개 전체 인구 감소지역으로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직접 총괄하는 부처인 것이지 사업 집행은 농식품부가 하게 됩니다. 그건 그대로, 바뀌지는 않고요. 다만 농식품부가 이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분과에 참여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하고 또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타 부처의 140여 개 되는 사업들이 기금에서는 그냥 사업에 부처 의견을 받고 부처가 실제 집행하고 부처가 실제 이 정책 제안하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직접 기금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출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기금사업성 계정에서 나가는 것이고 4개 분과를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분과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분과에는 해당 부처의 차관 등 또는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안을 마련하고 국회 재정위에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기획예산처가 주관으로 이 정책 사업들을 실제 집행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가 집행관리하는데 이 기금에서 전출해 주는 사업인지 이 구조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출 구조는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직접 집행……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 정책 사업들을 이관해서 직접 정책 수립도 가능하고 이 정책을 관리하고 정책도 스스로 평가하고 이런 구조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의 계정에 걸맞은, 목적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각 부처랑 상의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각 부처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처 기금사업으로 다른 일반회계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옳은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도 그렇고 지금 다른 기금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건 전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다부처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총괄하는 부처로서 미래대응이라고 하는, 미래 대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업의 집행은 해당 부처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영환 위원** 아직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법만 보면 기획예산처가 140여 개 중요 사업들을 다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직접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책 수정도 기획예산처가 가능하고 정책 관리도 하고 실제 정책 집행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각 부처에다 저희가 배정을 하고 사업은 그 부처들이 수행합니다.

○김영환 위원 이후에 법안소위 심사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재정경제부장관님 상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형일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박홍근 예산처장관님은 참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이형일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은 차제에는 나중에 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 그다음에 이 설계 경위 과정을 놓고 국정조사특위에 올려도 무방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이걸 굉장히 심각한 기금입니다. 아마 이형일 장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건 잘못된 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적자 국채를 100조 100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여유 자금이라고 104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그리고 추가정정예산안 편성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도 하기 전에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편입되도록 설계한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기금의 내용이다.

지난번에 내가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하는 기금이다. 둘째는 지방말살기금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보니까 주요 기금 수입원에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규정을 해 봤는데 추가세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추세치입니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를 통해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정전문가들이 봤을 때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성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세수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예산 부처의 세수추계는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2023년도에 보니까 무려 56.4조 원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24년도에는 30.8조 원의 오차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세수추계 자체에 오차가 발생했는데 추가세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먼저 세수추계와 관련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자문까지 받아서 AI까지 탑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막대한 규모의 세입이 들어옴에 따라 이거를 단년도 회계연도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훈 위원 오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미래대응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이형일 장관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박홍근 장관님 주도로 설계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정 당국자로서……

○**김상훈 위원**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내부의 예산실과 상의해서, 이 초호황 반도체가 영속적이지 않을 거고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예산을 과연 한 해에 다 털어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빚으로 갚을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게 소위 재정 댐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고안한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장관님, 예산처차관이 저한테 미래대응기금 설명하러 왔길래 ‘도대체 이 기금 설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회의를 통하지요.

○**김상훈 위원** 저는 솔직히 박홍근 장관이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박 장관님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그렇게 무능하거나 허수아비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크게 재정전문가는 아니시고, 물론 예산 편성·지출은 장관직에서 여러 참모들과 같이 안을 짜낼 수는 있겠지만 이 미래대응기금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기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이형일 장관님은 법안심사할 때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선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호황으로 인한 세입의 증대가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시로 들어온 세입을 저희로서는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좀 전에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년도 회계……

○**김상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지금 답변 시간입니다.

○**김상훈 위원** 우선 나라 빚을 먼저 갚아야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것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내년도에 국채가 최초로 1500조를 넘어가는데 무슨 여유자금이라고 벌써 104조를 편성해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을 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리 김 위원님도 오랫동안 재경위에 계셨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그대로 뒀으면 내년도 5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만

들어서 편성하고 나서 48.3까지, 3.3%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 정부 30년도에는 원래 그대로 뒀으면 59%대까지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런데 저희가 49%대까지 녹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액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제가 성장하냐, 감당할 수 있냐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지요.

제가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훈 위원** 재정준칙에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재정준칙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재정준칙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후, 그걸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포함해 가지고 다들 재정준칙이 유예 내지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직된 운영이 되면서 문제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재정준칙, 위원님도 아마 법안 내셨을 텐데.....

○**위원장 조승래** 말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마이너스 3% 관리재정수지 이 정부 안에 달성 가능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60% 범위 안에도, 저희가 49%까지 관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훨씬, 재정준칙 없이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승래**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지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질의가 다 끝났는데 장관이 그다음에 마이크 잡아 가지고 끝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적절하게 한번 끊어 주시고 다시 질문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야 간사님들께 제가 제안한 바는 본회의와 예결위 같이 답변시간 제외하고 질문하는 것도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문일답이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질의를 막 하신 다음에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답변 하시라고 보통 또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재경부장관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9월이니까 가상자산이 국내로 유입된 게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금액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조 7000억 정도, 2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얼마 들어왔느냐, 이것도 금액은 모르실 것 같은데 4조 7000억 원이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봐 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상, 56.8%가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어려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 국제적으로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유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순유출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에서 해외로 나간 것은 같은 기간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보면 무려 74%가 더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 즉 들어오는 거는 절반 이상 줄었고 나가는 건 74%가 나간 거예요. 즉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는데 국내거래소에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 파이낸스로 이사 가지 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침에 변함이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세금을 건으려면 몇 사람 정도가 과세 대상 인원이 되고 또 세금은 얼마나 건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한 500만 원 미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의 한 85%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공제를 250만 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천 취득자산을……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라고요. 세수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분들은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아는데 그래서 세수효과 얼마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거봐. 기재부에 내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답이 뭐라고 왔느냐. ‘현재로서는 예측이, 추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년 1월 1일, 석 달 뒤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세수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세도 이렇게 합니까? 소득세도 그렇게 하고 법인세도 이렇게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 세법은 24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시행을 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몇 명에 얼마를 세금 매길 건가는 나와 있어야지 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상자산은 말이지요. 거래관계가 복잡합니다. 스테이킹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뭐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가상자산을 예치해 놓고 나머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면서 이익이 생기면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에어드롭은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에어드롭은 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가상자산을……

○박수영 위원 디파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디파인……

○박수영 위원 토큰 스왑은 뭐지요?

가상자산은 우리가 주식 사듯이 돈 넣고 주식 1주 사는 게 아니고 채권 1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재부에, 재정부에 또 물어봤어요.

재정부 답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스테이킹의 경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의 경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들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물어봤는데 디파인 토큰스왑, 잘 모르겠는지 답도 안 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석 달 뒤에 과세한다는 부처의 입장이 이렇게 전부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쯤은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 국세청에서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박수영 위원 국세청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세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기재부 답은 이렇게밖에 못 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사실 국세청에서……

○박수영 위원 어디까지 준비됐다 이렇게 답을 못 합니까? 다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서둘러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국세청도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세청 답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를 몇 명한테 과세하는지도 모르고 석 달 뒤에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과세하는 방법도 그냥 주식 하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은.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런 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래 가지고 투자자는 부담이 늘어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순유출은 커지고 순유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우리 청년층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는 터무니없이

준비가 안 된 과세를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국세청이 준비가 잘되어 있다 이러면 그 자료를 빨리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국세청도 답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박수영 위원** 전부 안 돼 있으면 이 과세는 유예하는 게 맞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곧 준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20대, 30대의 경우에도 500만 원 미만이 한 9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세부담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있을 걸로 보이면 납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보완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박수영 위원님, 혹시 발언 시간 더 드릴까요? 1분 더 드리세요. 저 대답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자신 있게 준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만약 준비 안 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자꾸 국세청 탓으로 돌리는데 국세청이 준비된 자료 바로 모아서 보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세청이 실제로 과세하는 기관이지만 제도를 만들고 운행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재정부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건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재정부의 답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답을 주셔야지 전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여 드린 것처럼? 이게 멀리, 옛날에 온 것도 아니고 바로 9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온 답변들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과 세수효과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스테이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방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1월 1일 시행했는데도 잘 안 되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고 준비가 국세청에서 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부총리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신뢰라는 표현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안상훈 위원** 이번에 너무 오락가락하신 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이 세계개편안에 그냥 담았다가 나중에는 국민 여론, 불만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것을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몇 가지 원복한 것처럼 다시 주워 담는, 이런 오락가락 정책 형성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률안을 정부가 국회에서 낼 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 중에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로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이라는 것보다는.

○**안상훈 위원** 이번에 세계개편안 내신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당 위원들 지적이라도 제대로 수용해서 가지고 바꿀 용의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국회 심의 과정에 특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저희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상훈 위원**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저도 챙기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때도 제가 부총리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 설득도 재정부 입장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보고 또 행정이 해야 될 원칙적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심의 과정에서 같이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 대체토론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반발 때문에 접었고 또 부총리님 집 마련할 때 하셨던 1가구 비거주 그것도 원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 굉장히 앓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업상속공제 관련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상속 시 30년, 증여 시 20년'으로 강화를 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안상훈 위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평균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 14.3년에 불과합니다. 이게 단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책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일자리 방어 역할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용을 여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 억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당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영기간을 25년으로만 잡아도 전체 중소기업의 한 95% 정도는 지금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분석들을 중소기업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면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제도 지원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데 경영기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방어하겠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담겨 있는 거고요. 사후 관리기간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동안에 10년·7년·5년으로 이것을 줄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0년으로 확 올려 버렸습니다. 이러고 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곡소리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른 의도로 문을 닫고 현금 챙기고 나간다고 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완화된 요건으로, 원래 하던 대로라도 다시 원복을 해서 중소기업 승계받는 자식들이 예컨대 2세, 3세가 한 10년 정도라도 잘 꾸려 가면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지,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강화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상에서 보면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제도를 강화해서 진짜 가업다운 가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이고 가업이 되면 지원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 50년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어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존속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가업상속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30년마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때 만약에 못 지키고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가 그 나머지를 이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주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상훈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조승래** 예, 1분 더 주세요.

○**안상훈 위원** 다른 이슈도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일단 이 문제도 그래요. 빵집 얘기는 사실 대통령께서 공개된 회의에서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급물살을 타서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고, 제가 애초에 신뢰 문제를 거론한 게 그겁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고 제대로 된 내용이라는 판단보다는 여론이 일단 그렇다는 것을 부총리님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빵집이나 카페나 창고나 지금 예 드신 것, 거기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나머지 중요한 것은 제가 후속 질문에서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것은 대통령님 말씀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소위 했을 때 보면, 계속적으로 이 가업상속 문제에 대한 지적이 조세소위에도 있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아까 질의를 좀 뒤에 하신다고 했는데……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미래대응기금은 총 162조 3000억 규모로 되어 있지요, 총계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내년도 적립 예상 규모입니다.

○안도걸 위원 이 수입이라는 것이 좀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례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저희도 일시적 세입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번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제도적 장치잖아요. 이렇게 이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과거의 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피치도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기금 또 우리가 국채 발행 물량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변동성, 세수변동성이 너무 극심해진 이 시점에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과거의 틀로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162.3조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황금 비율이지요. 그래서 장차 세수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104조를 이번에 책정을 하셨네요. 또 긴급한 미래 대비 투자용으로 해 가지고 45조 그리고 채무를 감축하는 데도 12.5조, 지금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왜 하느냐, 다 채무를 갚아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채무를 다 갚아 버리면 나중에 세수가 부족하게 될 때는 또 빚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도 적당한 수준으로 감축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채무 감축을 통해서 결국에 내년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봤더니 제일 대표적인 게 수지 아닙니까? 관리재정수지지요. 통합재정수지를 먼저 보면 금년에 GDP 대비 -2.9인데 내년에 +1.9가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율이 물경 3.8%p 개선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재정수지지요, 국민연금 같은 일시적인 적립금을 뺀 것. 그게 금년에 GDP 대비 -3.8%인데 내년에 -0.1, 사실상 균형을 달성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20년 만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재정준칙으로 삼았던 게 GDP 3%입니다, -3%. 그렇지만 우리가 달성 못 했어요. 전부 다 4% 전후 숫자였거든요, -4%.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사실상 균형을 맞춰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 또 그리고 미래의 자원 부족에 대비한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대응기금 중에 약 70%, 정확하게 68% 정도를 국가채무 감축, 신규 국채 발행 물량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안정성의 용도인 거고 나머지 한 30%가량 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성으로 쓰는 겁니다, 45.4조 정도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시장이 지금 한 연 220조 정도 신규 발행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마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갚았을 때, 말씀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국채를 급히 조달하고 단기간에 조달하면 또 엄청난 이자의 부담까지 동시에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중요한데 왜 국제적으로 다 국가채무 비율을 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위 GDP 분모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채무 자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8.3%, 관리재정수지 -0.1%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말씀 주셨네요. 국가채무 있잖아요. 국가채무는 절대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국채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아니겠습니까?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GDP 비율은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안도걸 위원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40%, 5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 정도 됩니까, GDP 비율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마 IMF 선진국 비율이 104%, 108%, 우리보다 배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미국이 지금 한 150% 육박하거든요. 일본은 25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미래 대비를 위해서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 그래야만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패권을 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확보하는 것이요 우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재정수지를 이 정도로 건전하게 하면서 미래 대비 투자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에서 조만간에 OECD나 IMF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금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적인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국제기구 또 국제적인 흐름과 비교해서 명확한 논리를,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기금법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67개가 되는 기금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목표성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렇게 개편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가 30.5조 원이 줄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5조가 주는데 미래 대응이라고 정부가 그것을 보관하면 건전하게 쓰고 지자체가 보관하면 그것을 날림으로 씁니까? 교육청에서 보관하면 그것을 헛되이 씁니까?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발상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강남 부동산값 지금 내리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한 몇 주째 지금 강남 3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왜 내리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건데 지금 전반적인 세제개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세제 있지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해피한 상황이나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대통령님 발언은 최근 강남권은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상승한다는 그 가격 흐름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저희들은 대통령님과 똑같이, 정부 전체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지지난주에는 주거안정 플랜이라고 해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공적 주택을 늘리는 것도 같이 발표해서 점차 전력을 다해서 지금 부동산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공급은 하나도 먹히는 게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개편안으로 강남 집값 잡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발표하길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재부 1차관이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신데 갑자기 세제개편안에 바뀌 가지고 27년·28년까지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전에 이번이 한 번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 가지고 출구전략으로 몇 억씩 값을 내려 가지고 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7년·28년만, 말하자면 엑시트(Exit)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믿음이 안 갑니

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는 저희가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번에 한 것은 유예를 다시 한 게 아닙니다. 중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해 드린 겁니다.

○배준영 위원 29년에는 다시 돌린다면서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29년에는 다시 원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중과를 없앤다는…… 중과를 다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27년·28년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출 출회를 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가 낮으면 많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1%일 때는 매도 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30.4%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고 수도권 수준인 3.5%에서는 19.8%, 최근 서울 수준인 8.2%에서는 8.9%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싸지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이러면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팔지만 집값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평탄화 작업, 풍선 누르기처럼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지 못하면 양도세를 완화해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한국은행의 어떤, 말하자면 추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양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과세수가 한 60조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조달 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이제 60조 원서부터 기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는 162조 이런 정도가 아니고 200조 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같아요.

또 국채·조달 금리가 한 4.3%, 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조달금리에 따른 것에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기금에서,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것을 잘 운영해서 조달금리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금리, 이자를 줄이는 것하고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 잘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큰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적립을 하게 되고 내후년에도 또 적립하게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반도체 초호황 상태에서? 그러면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때에나 미래 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느 시점쯤에서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내년도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162조가량 규모이고요. 초과 세수는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정부, 재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아야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검토를 하게 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104조가량이 내년도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 104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향후에 지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또 그런 수익률을 당연히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담 운용기관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고 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들이 물론 포함되겠지요. 물론 향후에 미래대응기금이 여유자금인 얼마나 더 될지 또 연도별로 얼마나 우리가 지출 사업을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런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국내외 유망 자산에 분산투자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10년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국고채.

○윤후덕 위원 예, 10년물.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4%가량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초과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고려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봤더니 가령 사학연금 같은 경우가 한 8.8% 정도 그동안 여유자산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연기금투자펀드 같은 경우도 하여튼 4.5%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금의 조달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발생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몇 년 후에나 이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3년물이면 3년물에 맞춰서 거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서 그래서 당장 매년 써야 될 지출 사업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여유자금 중에서 몇 년 물에 따라서 저희가 도래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예, 수익률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해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명을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기획예산처장관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오늘 계속 여러 여야 위원님이 다 이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지난 최근 한 4~5년 동안의 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국회예정처나 곳곳에서 전문가들 논의 속에서 재정안정화 담이 필요했다, 그런 논쟁은 쌓여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재정 담이라고 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나오는 게 농촌기본소득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서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거나 실제 관여하면 논쟁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특회계라고 하는 여유재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지금 내국세에 다른 분야는 가져오지 않습니까, 소위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이례적인 초과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여기에 연동해서 사업 설계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내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그동안의 회계기준이나 회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일 수는 있지만 미래대응을 이야기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이 섞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설득이 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입장정리를 해서 차라리 다른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이와 관련된 아까 여야 위원님들 속에서 나오는 게 많은 사업 자체를 마치 기획예산처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이 이루어져서 그 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사업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3년, 어떤 사업은 지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안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아까 말씀드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4개 축의 사업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이리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없는 사업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더 부합하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기금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여기에 좀 더 집중투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쟁의 영역이어서 100%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니지만 재정 담,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이 셀 거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간사님. 재정안정화 장치 이 부분이 분명 거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략적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4개 분야를 빨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뒷받침을 위해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그 점을 계속, 논쟁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좀 더 논쟁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속에서 문제 제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소통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미래대응기금에 축적되는 일정 비율의 자금 자체가 지방을 위해서 쓰여질 거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실제 같이 풀어 나가려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진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저희가 지금 4개의 사업 계정이 대부분 지역, 지방에 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아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은 자기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더 달라 이 요구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교부금은 예외로 차치하더라도 교부세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올해가 본예산 69.4조인데 내년 77.2조로 올해보다 11.3%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머무르지 않고 내년도에 이 지방계정 3.5조의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위 교부세랑 똑같이 쓸 수 있는 3.5조를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가 여유재원까지 포함시켜 났고요.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봤더니 내국세에 연동된, 특히 법인세 때문에 너무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구상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구나 저희가 지방 우대 원칙에 의해서 지방에 훨씬 더 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단가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높여 주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성장이나 이런 분야에서 지방을 위한 산업 전략이 좀 같이 예산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게 설득이 돼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해가 돼야 동의를 얻고 그다음 법안 처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에서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주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승래 아니, 3분으로 하셔야지요.

○배준영 위원 아니, 5분 하세요.

○위원장 조승래 5분으로?

○배준영 위원 5분으로……

○위원장 조승래 그럼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형일 장관님께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박홍근 장관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

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정감사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기금의 문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추세치로 재원의 수입을 잡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문제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3년도에 이미 56조, 24년도에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추세치의 오류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 수입의 축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게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을 아마 하나의 기금으로 모은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기존의 회계, 기존의 기금과의 중복을 걸러 낼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지금 없어요. 이 말은 이 기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운용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사 통제를 걸러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지방주도성장인데 당장 내년도 기준으로만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이미 지방교부세 전체 재원의 30.5조 원이 틀렸어요. 없습니다. 이 기금으로 편입돼요. 그리고 이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각 단체가 필요한데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성격인데 이 기금에 편입되고 나서는 목적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교육청·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배제돼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서도 지방주도성장을 표방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했듯이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런 지적 사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사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짧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첫 번째, 모든 예산은 8월 말에 재정부의 세제실에서 내년도 세입 전망을 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치라고 하는 것이, 전망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희가 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세수 재추계의 모델을 저희가 고도화했다. 두 번째는, 세수 재추계를 과거와 같이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전망치 좀 더 확실도를 높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존 기금과의 중복성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모든 기금은 국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향후에 예결위뿐만 아니라 해당 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각 상임위에서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심의해서 그것을 확정된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주도성장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도 11.3%가 올라갑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그러나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바뀌었을 때는 그 정도 올 건데 바뀌니까 적게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후년에는 100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두 번 연속 저희가 대개 세수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2년 반, 2년……

○김상훈 위원 지금 총액 기준으로 30.5조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적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77조, 올해보다 11.3%가 지방정부에도 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재원 성격으로 3.5조가 이미 정부 안에 들어가 있고 필요하다면 여유재원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이게 100조로 올라간다. 그래서 내년이 조금 그런 결과가 좀 안 좋아 보이지 내후년을 올해와 비교해 보면 삼십몇 조가량, 내년하고 비교해 봐도 21조가량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감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이 기금이 무슨 선진적 기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기금이 선진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데 굉장히 원칙을 지켜서 잘 관리되고 집행이 돼야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무엇보다도 현행 국가재정법이 세계잉여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채 상환하는 데 쓰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야 향후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마련해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박홍근 장관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에 미래대응기금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가 내년에 얼마로 예상되니까? 추계를 얼마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반도체, 제가 내국세 전체는 190조 정도가 내년도에 증액하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194조라고 보고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194조입니다.

○**박수영 위원** 190조 추계를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4조가 늘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다 쓰지 않고 모아 두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세수 늘어난 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박수영 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다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194조나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둔다 이러면 저도 100% 찬성하고 박수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내년엔 우리 국고채 차환 얼마 합니까? 몇 조 차환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마 차환이 120조 정도……

○박수영 위원 이제 돌아오는 거, 만기 도래하는 거 110조 7000억은 그대로 차환하시고 추가로 또 발행하시지요? 얼마 발행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96조가량, 100조가량 되는 거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순증은 96조 3000억 원을 발행하시고요. 그전에 이미 해 놓은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국고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얼마냐? 106조입니다. 106조의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적립해 놓은 돈은 104조입니다. 즉 세수가 늘어난 194조 원은 다 써 버리고 106조를 추가로 빌리고, 차환 110조 7000억 플러스 106조를 또 빌려 가지고 그중에 104조 원을 적립해 놓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랬고 국고채 조달금리하고 자산운용사 수익 문제가 논의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국고채가 아니고 남은 세금에서 적립하는 것이라면 국고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국고채 조달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30년물은 5%대로 올라가고 아까 미국 것 들어올 때 보니까 5년물도 4%대로 올라갔는데 국고채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박수영 위원 그래서 답변을 아까 하실 때 뭐라 했냐면 자산운용사를 잘 선정해 가지고 이 수익이 국고채 조달금리보다 더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국고채 100조 낼 필요도 없어요, 106조 낼 필요도 없어. 한 1000조 내 가지고 자산운용 잘해 가지고 이익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전문용어로 빚투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반도채 호황으로 들어온 내년도 추가 세수 194조 원에서 절반 정도를 쓰고 절반 정도를 미래대응을 위해서 적립하겠다, 저는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94조 원은 다 쓰고 106조를 또 빌려서 104조를 적립하겠다, 그리고 적립한 104조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애를 쓰겠다 지금 이 구조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지요. 194조가 걷어졌으면, 제가 기재부장관이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었으면 절반 딱 잘라고 빚 갚고 절반 딱 잘라서 적립해 놓을 겁니다. 그런데 다 쓰고 106조를 다시 빌려서 104조를 적립……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고 하니 세수 194조 나온 것 중에 일부를 적립하는 줄 알고 계신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106조의 빚을 내고 104조를 적립하겠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기재부 공무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고채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국고채를 굳이 발행해야 되느냐? 이번에 발행하는 106조,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게 낫고 그때 발행하면 국고채 조달금

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내년에 상환하는 것의 평균 국고채 이자율이 3.6%입니다. 그런데 사점몇 %짜리 빌리고 오점몇 %짜리 빌려 가지고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잘 연구하시고 법안심사소위와 국정감사 때 제대로 시간 제약 없이 논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그런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제도를 새로 설계했겠습니까?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년 총수입이 881조입니다, 그중에 총지출이 821조.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총수입에 기금이 포함된 건, 워낙 그쪽 분야 잘 아시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떼 놓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지금 내국세 전체 들어온 것하고 또 국채하고 이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기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채시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온 내국세로 국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든지 절반이든지 갚았을 때 대한민국 국채시장 자체 규모가 확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정성을 어떻게 꺾을 것입니까? 이 국채시장을 걱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세계 경제에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규모가 좀 작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적정 규모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오히려 얘기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수영 위원 110조 원 차환하시잖아요. 원래 흐르던 만기 도래하는 것 그대로 차환 다 하시는데 왜 세수가 많은데 또 100조를 내느냐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차환하고 또 신규 발행하고 이걸 계속 해마다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시는데 서로 말을 겹치게 하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면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조승래 예.

마이크 넣어 주세요, 1분 넣어 주시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미 12.5조는 내년에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걸로 했고요, 물론 올해도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가 아주 악화돼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은 전체 GDP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서 재정 상태가 좋단 말이지요. 이걸 우리의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의 평가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걱정한 국채시장의 안정성도 꺾어야 되는 숙제가 또 저희에게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신규 국채 발행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자가, 더 추가적으로 갚았다가 올라간 이자를 부담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부담이 또 동시

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말씀하세요.

○박수영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조나 벌리면 그중에 적립하는 거에 찬성이예요. 그런데 리볼빙되는 것 차환 다 하고 또 추가로 낼 이유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때 같으면 이렇게 편성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누가 이런 결정…… 미래대응기금은 오케이, 적립하는 돈은 남은 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하고 수익을 더 내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저는 제가 기획예산처에 있을 때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 다 이해하는지,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누가 낸 아이디어고 누가 이렇게 빚을 내서 적립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게 저는 매우 궁금하고 국정감사 때 그걸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그러면 이광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광재 위원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세금은 합리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지난번 예결위에 국세청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도 과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국세청장 얘기가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어떤 것은 29년이 지났는데도 과표액이 똑같잖아요. 20년……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각각의 제도가……

○이광재 위원 저기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연 250만 원인데 이것은 개정된 게 30년, 추가공제된 것은 50만 원 하는 것은 32년, 상속세 기초공제된 것은 2억 원으로 해 났는데 29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 5억 원에 29년,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했는데 29년, 증여세 과세최저한도는 22년. 이게 20년 전이면, 29년 전이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물가가 더 많이 변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표도 시대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세금의 과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과표를 정할 때는 물가의 변동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이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면세점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부 물가연동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물가연동제를 하는 나라는 어디 어디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금……

○이광재 위원 우리가 보는 G7 국가에서, 미국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물가연동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적어도 G7, 우리가 선진국의 스탠더드를 향해 나간다면 G7 국가에서 물가연동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일부 국가가 하고 일부 국가가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따라갈지는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정까지 같이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생긴 거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지난 20년 동안 4.6%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2.0%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가상승률 부분까지도 과연 세금에 포함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제외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규명할 필요도 있고 국제적인 기준을 자꾸 따라가야만 합리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두 번째는 올해 우리가 초과세수 예측한 건 얼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올봄에 추경할 때 한 25조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추경을 해서 세입을 증액했고요. 그 이후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재추계된 규모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숫자는 아직 좀 더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대폭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내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내년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584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우리가 내년에는 과연 초과세수가 얼마나 될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광재 위원 그것은 언제 하면 우리가 알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추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엔 연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세수 추계는 올해는 언제 발표해요, 올해 것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올해는 9월 말이 되기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광재 위원 내일모레 발표하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하여튼 10월이 되기 전에는 저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 기업인들하고 체크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던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발생하다 보니……

○이광재 위원 제가 용인도 가 보고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이미 기업들하고 자치단체장들하고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계산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뀔다는데 과표는 안 바뀌는구먼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아까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세세 업종 관리……

○안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 병원을 빼신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 이런 거랑 같은……

○안상훈 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러 관계 부처한테 협의를 했는데 이 건별 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제가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보건의료시스템은 재정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통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생산과 공급은 민간이 압도적인 수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방금 라이선스,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가격 통제를 받거든요. 가격 통제와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규제를 정부에서 받는 대신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근근이, 한편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것 중에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게 민간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다른 라이선스 업종하고는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의 문제입니다. 재경부장관이기는 하시지만 대한민국에 지역필수의료 관련해 갖고 십수 년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

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안상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급 부족입니다. 생산·공급에서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지금 정책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부의 가업상속에서 병원이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 볼게요.

조선일보에 9월 22일 날 보도된 건입니다.

강남의 모 산부인과입니다. 한 4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아이를 6만 5000명 이상 받아 낸 산부인과 쪽의 대표적인 병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번에 상속공제에서 배제가, 제외가 된다 그러면 기존 같으면 40억 세부담이었는데 이게 330억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부인과 없어 가지고 만들라고 지원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쪽은 330억 세부담 안 돼 가지고 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만약 협의를 했으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이게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병원들도 있고 우리나라 1차·2차·3차 병원 제도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병원들은 준공영시스템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 사기업처럼 세금을 그냥 그렇게 거둬도 되는 대상으로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가업상속공제 다른 요건, 프랜차이즈라든지 부동산 갖고 돈 번다든지 이런…… 이번에 제외 사유 거론하신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무진한테 얘기를 해서 가지고 차분히 제대로 따져서 다시 원복시키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가면 필수요를 담당하는 지역의 병원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건 라이선스만 있다 그래도 큰 병원을 바로 살 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2세대, 자식 중에 안 되면 사위라도 혹은 며느리라도 이래 가지고 넘어가는 게 우리 관례고 전통이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병원들 문 닫아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뽕뽕이 현상이 심한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이걸 좀 꼼꼼하게 살피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수치만 보면 지방배제성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교부세가 30.5조 원이 주는데 미래성장기금은 겨우 15조 3000억 원만 쓴다는 거거든요. 반도 안 쓰고…… 반 정도 쓰는 거네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5조가 주는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서는 10조 1000억 원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돈도 적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맑은 날에 우산을 고쳐라, 거안사위, 편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MF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 다 유동성 위기라든지 국가부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법안 심사할 때 많이 할 텐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빚을 갚는 게 국가재정법의 기본원칙인데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남는 돈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줄 알고 있는데 멸절된 빚을 내 가지고 빚투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이지 우리 미래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실을 저지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역시 강화됐는데 2028년 이후로는 양도세가 2배 이상 일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폐지되는데 이러면 결국 농지 관련된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헤쳐 나가야 될지 고민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총리시니까 제가 좀 여쭙보는데 방향성은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옳을 수도 있는데 반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의 수도권화 작업도 그렇고 농지조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지 지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고 농지 전수조사 하셨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비한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다른 자료하고 교차검증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것만 보고 말씀을하신 것 같아서 과연 그게 정확한가 이런 논쟁도 있었지요. 그래서 당장 5월에 실시된 기본조사로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 가치가 폭락되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들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제도 있고 대체농지 확보 애로도 있고 그리고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정책위 의장도 죄송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니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고 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맞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언을 하셨고 만약에 안 하셨으면 어떻게 조언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땅을 교차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법제가 바뀌는 걸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방향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먼저 원칙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느냐에 관련해서는 기본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가는 것이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선의로 인해서 이루어졌거나 고의적인 게 아니면 그런 것은 현실적인 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임대차 입법할 때도 선의로 그 법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법을 선의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 간에 선의로 땅을 경작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도 선의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정책의 효과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도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배준영 위원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금 현재는, 농지법 관련해서는 개정 작업을 당장 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끝나셨어요?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저도 함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님, 방금 이야기했던 농지조사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관성과 또는 그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는 실태 속에서의 제도의 재개선 지점도 있을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그 지점에 대한 논쟁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그다음 그 외에 또 하나는 최근에 주거안정플랜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진전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초점이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주택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거안정플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안정계획 또는 주거복지, 주거·주택정책 이렇게 해서 속에서의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도 주거안정플랜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주택이 공급돼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119만 호 중에서 92만 호 되는 77%를 수도권에 하는 거랑 그리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19만 호 하는데 그중에 무주택 청년층에게 50%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주거안정플랜의 초점은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주거안정플랜의 포인트는 주거복지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공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거고 실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도 같이 챙겨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것 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주거복지, 공급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세제의 포인트가 집값 잡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실제 그러려고 주택정책을 한 건 아니니까. 그 지점에서 일관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11월 달에 세제 논의할 때도 그 지점을 반영해서 논의를 풀었으면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리고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실제 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시장 자체가 주택 수요자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량이 공급돼야 푸는 거고 공공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선도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이든 또는 다양한 기금을 통해서 실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긴 호흡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민간임대사업자도 양도 수익을 노리는 데다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실제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건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감합니다.

○오기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사업…… 지금 내역사업이 몇 개입니까? 100개가 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140개……

○위원장 조승래 140?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30개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130. 130개 정도가 내역사업인데 내역사업을 선정할 때 미래대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선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 사업의 효과, 성과지표입니다. 성과지표가 기존의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과 다른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사업이라는 건 늘상…… 기금이라는 것은 존치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과지표가 정확했을 때 당연히 존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조승래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1분만 쓰시지요.

○이광재 위원 재정경제부장관님, 제가 아까 소득세하고 과표구간 공제액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 38개국 중에 17개 국가가 자동으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전부 자동 연동돼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가 독일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한국은 재량적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자동 물가 연동 없음. 똑같은 나라 일본 없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없는 거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호주도 도입했는데 취소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보편적인 제도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세금 체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볼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38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의사일정 제204항까지 이상 166건의 법률안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205항부터 의사일정 제215항까지 이상 11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소위원장님, 오기형 소위원장님, 강민국 소위원장님과 각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이광재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위 회의를 간사들께서 곧 협의하셔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남준 김상훈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박수영 배준영 안도걸 안상훈 오기형
윤영석 윤후덕 이광재 이준석 이춘석 임이자 정성호 정태호 조승래

○청가 위원(3인)

강민국 김성환 이종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산실장 김명중
정책기획관 박봉용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재정혁신정책관직무대리 임영진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박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81)

이상 2건 9월 16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20)

9월 18일 회부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8.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72)

이상 3건 9월 2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8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9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9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14)

이상 10건 9월 22일 회부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2. 김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45)

이상 4건 9월 2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662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626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부령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9호	제정	재정경제부